

건설정책리뷰 2018-02

# 2018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이종광 · 박승국

2018. 08.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요 약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산업에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힘의 격차임. 하도급공사를 주로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현장 일용근로자는 하도급업체가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기업 간 관계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임.
- 본 조사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중요하다고 파악한 하도급제도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하도급 건설업체의 정책 체감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세부적 수준에서 제도의 작동실태를 상대 평가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8개 범주로 구분하여 총 39개 항목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표 3-1〉 및 〈표 3-2〉 참고), 하도급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5,000개를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319개의 유효 응답지를 분석하였음.
  -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고,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인 '전혀 없다'를 100점으로 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여 '별로 없다'에 75점, '보통'에 50점, '다소 있다'에 25점, '매우 많다'에 0점을 배점함.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합산하여 가중평균한 점수를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함(〈표 3-3〉, 〈표 3-4〉 참고).
  - 해당항목에 대한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하도급업체는 상대적으로 공정거래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공정거래의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요 약

- 39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8.3점으로 조사되었음(항목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본문 <표 4-1> 참고). 지난해 전체 체감도 점수 67.9점보다 0.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대상 8개 범주별 체감도 점수는 하도급대금 조정이 58.4점(2017년 61.5점, 2016년 조사 없음)으로 가장 낮고, 점수가 높아지는 순으로 부당특약이 60.8점(2017년 61.2점, 2016년 61.4점), 하도급대금 지급 65.1점(2017년 65.3점, 2016년 조사 없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7.0점(2017년 66.3점, 2016년 66.4점), 보복조치의 금지 73.2점(2017년 조사 없음, 2016년 조사 없음), 부당감액 76.1점(2017년 74.4점, 2016년 77.0점), 부당한 위탁취소 78.8점(2017년 78.0점, 2016년 79.5점), 부당반품 80.6점(2017년 78.6점, 2016년 82.7점)으로 조사되었음(본문 <표 4-2> 참고).
  - 체감도 점수가 낮을수록 불공정거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Top 5 & Bottom 5 분석을 통해 체감도 점수가 높은 상위 5개 항목과 체감도 점수가 낮은 하위 5개 항목을 선별하여 실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작동실태가 양호한 항목과 그러하지 아니한 항목을 구분함 (본문 <표 5-2>, <표 5-3> 참고).
  - Top 5 항목은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1개, 부당한 감액이 1개로 나타났음.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반품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은 산업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 요 약

- Bottom 5 항목은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2개로 나타났다.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들도 부당특약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부당특약은 2016년에도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범주로 조사되었음.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도 심각한 상황임.

□ 정책당국은 부당특약,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시정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부당특약은 계약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도록 예정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불공정행위이나, 대체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외에 복잡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문서나 구두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원·하도급업체 당사간의 계약이므로 제도적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제도개선 외에도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하도급관계의 특성상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더라도 향후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입비용이 과다하고, 승소의 가능성과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규모가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음. 3배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소단계에서 소송을 위한 사전상담과 소송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목 차

1. 조사배경 및 목적 .....	1
2. 조사대상 관련 하도급제도의 주요 내용 .....	3
3. 조사개요 .....	10
4.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	13
5. 정책적 시사점 .....	26
(부록)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설문지 .....	31





## 1 조사배경 및 목적

-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경제기조의 3대 축으로 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경제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는 개별 기업의 수익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생태계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는 건설산업에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도급거래 당사자 외에 일용근로자까지 포함하는 건설생산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즉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공정경제 측면 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의 정책에 비하여 폭이 크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하도급업체는 일한 만큼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일용근로자들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가계도 일정한 소득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불공정하도급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적 이슈임.
- 건설업체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2016년 계약실적 91조5602억 원 중 하도급계약 실적은 65조 8836억 원으로 하도급시장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전체 계약금액 중 하도급계약금액이 72%에 이를 정도로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공사는 다양한 생산요소, 기술, 인력의 결합을 통한 복합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건설업체는 수주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므로 대체로 일관생산에 따른 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생산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추어 생산방식과 생산요소를 구성하게 되는데, 전체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공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주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임.
  - 발주자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를 ‘원도급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원도급업체로부터 전체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를 ‘하도급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의 계약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힘의 격차임. 하도급공사를 주로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현장 일용근로자는 하도급업체가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기업 간 관계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임.
- 본 조사는 건설하도급에서 하도급업체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하도급업체의 거래공정성 체감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제도의 작동실태를 상대 평가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조사대상 관련 하도급제도의 주요내용

□ 건설하도급에서 불공정거래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으로 함.

-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기술자료 제공금지 사항은 건설하도급과 관련이 많지 않아 제외하였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일반조항 외에 하도급업체의 권리와 이익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특수조건 즉 부당특약을 강제하는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계약이 변경되어, 원도급업체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일반적으로 증액)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적법하게 조정하지 않는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하도급업체의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클레임이 증가하면서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2018년 조사에서 보복조치 금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보복조치 금지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어(2018. 1. 17 개정)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

### □ 3배 손해배상 적용

- 당초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도를 기술유용(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2011.6.30. 부터 적용)에 대해서만 적용.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적용범위를 확대(2013.11.29. 시행). 보복조치를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에 포함(2018.7.17. 시행). 보복조치는 별도 항목에서 다룸.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네 가지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와 별개로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음. 하도급법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제1항,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제1항·제2항,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제3항 및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부당특약

- 당사자 간 합의(특약)를 명분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존재하였으나, 특약은 당사자 간 합의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웠던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의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4년 2월 14일자로 시행(하도급법 제3조의4,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2.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3.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4.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 부당특약 금지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당특약을 설정한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과징금(제25조의3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조항을 함께 도입하였음.

## □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바, 하도급업체(수급인)는 계약에 따른 건설공사를 이행하고 원도급업체(도급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함. 하도급업체에게 있어서 공사수행에 따른 하

도급대금의 지급 가능성, 지급되리라는 예측은 하도급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주요한 근거가 됨.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고 일반화 된다면 시장거래의 계속성이 위협받고 신뢰체계가 붕괴될 위험을 초래함.

-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훼손할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급여와 소득수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됨. 특히 건설업의 특성 상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대금 지급과 조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조정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음(하도급법 제13조 및 제16조).
-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종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개정 하도급법(2018. 1. 16.)에서는 원재료 가격을 포함하여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건비나 경비 등 원재료 이외 항목의 가격변동으로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를 확대하였음(2017. 7. 17.부터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원가상승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계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2018.1.17. 개정, 2018.7.17. 시행)

## □ 보복금지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계약당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제하고 있음. 종전에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에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하도급분쟁 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이유로 보복하는 경우만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있었음. 2018년 1월 17일자 개정 법률에서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도 위법행위에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음(2018.7.17. 시행). 보복조치 금지는 3배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함.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2의2.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2018.1.17. 개정, 2018.7.17. 시행)

3.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3 조사개요

### □ 조사기업

- 전문건설업체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유효하게 분석 가능한 응답지 319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 □ 체감도 조사대상 설문

- 4개 분야의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함. 2018년 조사에서 '보복조치 금지' 범주를 신설하고 항목 1개를 추가하였음.
- 2017년 1년 간 발생한 건설하도급거래를 조사.

〈표 3-1〉 대상행위 범주 및 항목

분 야	범 주	항 목
부당특약	부당특약	10
3배 손해배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8
	부당한 위탁취소	2
	부당감액	7
	부당반품	4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	4
	하도급대금 조정	3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 금지	1

- 조사대상 39개 항목의 상세내용은 <표 3-2>와 같음.

〈표 3-2〉 조사대상 항목 상세 내용

범주	항 목
1. 부당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3. 부당한 위탁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4. 부당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5. 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6. 하도급대금 지급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7. 하도급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조사 및 분석방법

-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의 발생빈도를 5단계(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로 구분하고 응답자가 마킹하게 함.
- 체감정도 단계별로 <표 3-3>과 같이 불공정거래가 '전혀 없다'를 100점으로 하고 불공정거래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하여 불공정거래가 '매우 많다'의 경우 0점을 배점함.

<표 3-3> 단계별 배점

단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배점	100	75	50	25	0

- <표 3-4>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자가 선택한 항목별 응답을 대응하는 점수로 전환하여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가중 평균한 값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함.

<표 3-4>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산정 방식

전혀 없다 응답수	× 100 +	별로 없다 응답수	× 75 +	보통 응답수	× 50 +	다소 있다 응답수	× 25 +	매우 많다 응답수	× 0) /	전체 응답수	=
-----------------	---------	-----------------	--------	-----------	--------	-----------------	--------	-----------------	--------	-----------	---

## 4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 2018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9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전체 점수는 68.3점으로 조사되었음.
  - 2017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전체 점수 67.9점에 비해 0.4점 상승한 수치임. 2016년 조사 체감도 점수 70.1점과 비교하면 1.8점 낮은 점수임.
  -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등 기존 3개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2017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2017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4-2 참고).
- 39개 항목별 체감도 점수는 <표 4-1>과 같음.
  -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체감도 점수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점수이며, 체감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여 절대적 기준으로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함.
  - 부당반품 금지 범주 ①번 항목(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은 82.1점으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이 항목에서 공정거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부당특약 금지 범주 ⑥번 항목(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은 55.7점으로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이 항목의 공정거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4-1〉 2018년 항목별 체감도 점수 및 연도별 비교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2018	증감	2017	증감	2016
1.부당특약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60.1	↓	60.6	↑	59.3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7.5	↑	55.3	↓	57.3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된 비용부담 약정	59.59	↓	59.60	↓	61.3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64.5	↑	63.7	↓	66.9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2	↑	63.1	↑	62.7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5.7	↓	56.5	↑	56.1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4	↑	65.3	↓	66.2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3.6	↓	65.4	↑	65.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 약정	59.9	↓	62.1	↑	60.8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58.0	↓	60.7	↑	58.8
2.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3.0	↓	64.9	↑	64.7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5.2	↓	65.9	↓	66.0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1.8	↓	72.2	↑	72.0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8.7	↑	67.7	↓	68.2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2.2	↑	60.6	↑	60.1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8.3	↑	65.3	↓	67.1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6.3	↑	65.7	↑	63.5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5	↑	68.0	↓	69.5
3.부당한 위탁 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80.2	↑	79.0	↓	79.5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7.4	↑	77.1	↓	79.4
4.부당 감액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2.1	↑	70.8	↓	72.6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2.9	↑	72.6	↓	73.7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8.3	↑	75.2	↓	78.7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3	↑	75.2	↓	75.5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75.5	↑	75.1	↓	78.2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9.7	↑	76.3	↓	81.2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8.7	↑	75.2	↓	78.7
5.부당 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2.1	↑	79.9	↓	83.7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6	↑	79.2	↓	81.9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0.5	↑	78.6	↓	83.1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9.3	↑	76.9	↓	81.9
6.하도급 대금 지급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9.2	↓	70.2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2.9	↑	61.5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58.7	↓	60.5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69.8	↑	68.9		
7.하도급 대금 조정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58.7	↓	61.6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58.8	↓	62.4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57.6	↓	60.5		
8.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3.2				

□ 8개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표 4-2>와 같음.

<표 4-2> 2018년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범주	1. 부당 특약	2.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 부당한 위탁취소	4. 부당감액	5. 부당반품	6. 하도급 대금 지급	7. 하도급 대금 조정	8. 보복 조치 금지
2018	⑦60.8	⑤67.0	②78.8	③76.1	①80.6	⑥65.1	⑧58.4	④73.2
2017	⑦61.2	④66.3	②78.0	③74.4	①78.6	⑤65.3	⑥61.5	-
2016	⑤61.4	④66.4	②79.5	③77.0	①82.7	-	-	-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부당반품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80.6점으로 가장 높음(2016년, 2017년 조사와 같은 순위). 다음으로 부당한 위탁취소 78.8점, 부당감액 76.1점, 보복조치 금지 73.2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7.0점, 하도급대금 지급 65.1점, 부당특약 60.8점이며, 하도급 대금 조정 58.4점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음.
- 1순위(부당반품)에 이어 2순위(부당한 위탁취소)와 3순위(부당감액)도 2016년, 2017년 조사와 범주별 순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당특약 범주는 2018년 조사에서 7순위에 해당하여 최하위는 면하였으나, 체감도 점수는 2016년 61.4점, 2017년 61.2점, 2018년 60.8점으로 점수가 계속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018년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가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체감도 점수도 58.4점으로 2017년의 61.5점에 비해 하락하였음. 하도급대금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책당국의 관심이 요구됨.
-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68.3점을 기준으로 부당반품(80.6점), 부당한 위탁취소(78.8점), 부당감액(76.1점), 보복조치 금지 (73.2점) 등 4가지 범주는 68.3점 이상에 해당함. 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7.0점), 하도급대금 지급(65.1점), 부당특약(60.8점), 하도급대금 조정(58.4점) 등 네 가지 범주는 전체 체감도 점수 68.3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도급대금 결정, 지급 및 조정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계약조건과 관련한 부당특약 설정에서도 불공정행위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표 4-3>과 같음.

<표 4-3> 부당특약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4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64.5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3.6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2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0.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59.9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9.6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58.0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7.5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5.7

- 부당특약 금지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60.8점.
-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65.4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5.7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순위에 변동은 있으나 최하위 2개 항목의 구성이 2017년과 동일.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10개 항목이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68.3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당특약 관련 항목에서 불공정거래가 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하면 <표 4-4>와 같음.

〈표 4-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1.8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5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8.7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8.3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6.3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5.2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3.0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2.2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67.0점.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71.8점)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항목(62.2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최고점 및 최저점 항목이 2016년, 2017년 조사와 동일).
-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68.3점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4개, 68.3점 미만에 해당하는 항목이 4개로 나타났음. 특히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62.2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63.0점) 등의 항목은 2017년 조사에서도 가장 하위에 해당하였는데, 2018년 조사에서도 낮은 체감도 점수를 나타내어 이들 항목과 관련되는 불공정거래 발생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음.

□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하면 <표 4-5>와 같음.

**<표 4-5> 부당한 위탁취소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80.2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7.4

-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8.8점.
  - 체감도 점수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항목(80.2점),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항목(77.4점)의 순이며, 두 항목 모두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68.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범주보다 상대적으로 체감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건설공사에서 목적물 수령거부나 인수거부, 계약취소와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4-6>과 같음.

- 부당감액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76.1점.
-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항목(79.7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발주취소·경제상황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항목(72.1점)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최고 점과 최저점 항목이 2017년, 2016년 조사와 같음). 원도급업체가 건설공사 수주 감소, 수익성 악화 등에 따른 경영상 위험을 하도급업체에게 손쉽게 전가하는 행태가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4-6〉 부당감액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⑥ 대금지급 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9.7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8.7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8.3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 하도급대금 공제	75.5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3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2.9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2.1

-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7개 항목 모두의 체감도 점수가 전체 체감도 점수 68.3 점을 상회하고 있음. 다른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음(최고점과 최저점 항목이 2017년과 동일함).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4-7〉과 같음.

〈표 4-7〉 부당반품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2.1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6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0.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9.3

- 부당반품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80.6점. 조사대상 7개 범주 중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2016년, 2017년 조사에서도 1위).
-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항목(82.1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음.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항목(79.3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음(최고점 및 최저점 항목이 2016년, 2017년 조사와 동일).

- 부당반품에 속하는 4개 항목 모두 전체 체감도 점수 68.3점보다 높은 80점대 초반대로 나타나 부당반품과 관련된 하도급거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도급대금지급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4-8>과 같음.

**<표 4-8> 하도급대금지급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69.8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9.2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2.9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58.7

- 하도급대금지급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65.1점.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항목(69.8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항목(58.7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음.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자신이 수령한 공사대금 중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하도급대금 약정기일을 잘 지키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더 많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도급대금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는 <표 4-9>와 같음.

**<표 4-9> 하도급대금조정 항목 체감도 점수 순위**

항 목	체감도 점수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58.8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58.7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57.6

- 하도급대금조정 범주의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58.4점.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항목(58.8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고,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 통지하지 않음 항목(57.6점)의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음.
- 하도급대금조정 범주에 속하는 3개 항목 모두 전체 체감도 점수 68.3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체감도 점수 순위는 2017년 조사와 동일함.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에 따라 발주자와 원도급업체 사이에 조정된 계약금액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정 조정기한 내에 조정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보복조치 금지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표 4-10>와 같음.

**<표 4-10> 보복조치 금지 항목 체감도 점수**

항 목	체감도 점수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3.2

- 보복조치 금지 범주에 속하는 조사항목은 1개 항목임. 수주기회 제한,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음. 2018년에 처음으로 조사하였으며, 체감도 점수는 73.2점임. 전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68.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양호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보복조치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되므로 정책당국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 <표 4-10>은 조사7대상 7개 범주별로 각 범주에 속하는 항목을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서로 배열한 <표 4-3> ~ <표 4-10>을 통합하여 나타낸 것임.

<표 4-11> 범주별 항목의 체감도 점수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 부당특약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4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64.5
	⑧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3.6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2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0.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59.9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9.6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58.0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7.5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5.7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1.8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5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8.7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8.3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6.3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5.2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3.0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2.2
3. 부당한 위탁취소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80.2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7.4
4. 부당감액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9.7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8.7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8.3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75.5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3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2.9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2.1
	5. 부당반품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6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0.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9.3
6. 하도급대금 지급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69.8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9.2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2.9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58.7
7. 하도급대금 조정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58.8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58.7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57.6
8. 보복조치 금지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3.2

- 조사대상 8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를 5점 구간으로 나누어 표시한 결과는 <표 4-12>과 같음. 조사대상 범주에 따라 그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의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구간에 차이가 있음.

〈표 4-12〉 체감도 점수 구간별 분포

범주	항목	체감도 점수	51-55	56-60	61-65	66-70	71-75	76-80	81-85
1.부당특약	①	60.1		■					
	②	57.5		■					
	③	59.6		■					
	④	64.5			■				
	⑤	63.2			■				
	⑥	55.7	■						
	⑦	65.4			■				
	⑧	63.6			■				
	⑨	59.9		■					
	⑩	58.0		■					
2.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①	63.0			■				
	②	65.2			■				
	③	71.8					■		
	④	68.7				■			
	⑤	62.2			■				
	⑥	68.3				■			
	⑦	66.3				■			
	⑧	70.5				■			
3.부당한 위탁 취소	①	80.2						■	
	②	77.4						■	
4.부당감액	①	72.1					■		
	②	72.9					■		
	③	78.3						■	
	④	75.3					■		
	⑤	75.5					■		
	⑥	79.7						■	
	⑦	78.7						■	
5.부당반품	①	82.1							■
	②	80.6						■	
	③	80.5						■	
	④	79.3						■	
6.하도급대금 지급	①	69.2				■			
	②	62.9			■				
	③	58.7		■					
	④	69.8				■			
7.하도급대금 조정	①	58.7		■					
	②	58.8		■					
	③	57.6		■					
8.보복조치 금지	①	73.2				■			



- 조사대상 항목을 체감도 점수 65점 이하와 66점 이상으로 나누어 분포현황을 보면,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51-65점 이하 구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보복조치의 금지 범주에 속하는 항목은 대부분 66-80점 구간에 분포하고 있음.
- 50점대(51-60점)에 해당하는 항목은 10개인데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 6개, 하도급대금지급 범주 1개, 하도급대금조정 범주 3개로 나타났음. 하도급대금조정 범주의 경우 3개 항목 모두 50점대 구간에 분포함.
- 60점대(61-70점)에 해당하는 항목은 14개인데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 4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7개, 하도급대금지급 3개로 나타났음.
- 70점대(71-80점)에 해당하는 항목은 14개인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 1개,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 2개, 부당감액 7개, 부당반품 3개, 보복조치 금지 1개로 나타났음.
- 80점대(81-90점)에 해당하는 항목은 1개로 부당감액 범주 1개 항목이 있음.
-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결정·지급·조정 관련 항목은 대체로 전체 체감도 점수(68.3점)보다 낮을 뿐 아니라, 50점대 및 60점대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은 주로 70점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5 정책적 시사점

□ <표 5-1>은 전체 항목을 범주에 관계없이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한 결과임.

<표 5-1> 2018 항목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순위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2.1
5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6
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0.5
3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80.2
4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9.7
5	④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반품	79.3
4	⑦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78.7
4	③ 현금 지급이나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과대 감액	78.3
3	②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	77.4
4	⑤ 원도급사의 물품, 장비 등을 구매·사용하게 한 후 적정대금 이상의 하도급대금 공제	75.5
4	④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5.3
8	① 원사업자가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73.2
4	② 합의 성립 전 위탁부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 하도급대금 감액	72.9
4	①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2.1
2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등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71.8
2	⑧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인하 등의 사유로 불리한 하도급대금 결정	70.5
6	④ 공사대금 중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69.8
6	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69.2
2	④ 거래조건 착오나, 타 견적 또는 거짓 견적서를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	68.7
2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에 따른 직접공사비 합계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8.3
2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66.3
1	⑦ 하자담보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5.4
2	② 일방적 일정금액 할당 후 해당금액 제외된 하도급대금 결정	65.2
1	④ 인허가, 환경관리, 품질관리와 관련된 비용부담 약정	64.5
1	⑧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불합리한 책임부담 약정	63.6
1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3.2
2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하는 하도급대금 결정	63.0
6	② 하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62.9
2	⑤ 일방적인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62.2
1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미기재 내용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60.1
1	⑨ 간접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 일률적 제한약정	59.9
1	③ 입찰내역 미기재사항 요구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9.6
7	②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58.8
6	③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	58.7
7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58.6
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58.0
7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57.6
1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7.5
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5.7

- 부당반품,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는 중위권,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범주는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Top 5 & Bottom 5 분석을 통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 항목, 공정거래 체감도가 낮은 순으로 5개 항목을 선정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함.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Top 5 항목을 선정한 결과는 <표 5-2>와 같음.

**<표 5-2>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상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5	①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	82.1
5	②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	80.6
5	③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	80.5
3	①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80.2
4	⑥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	79.7

- 체감도 점수가 가장 높은 1위 항목은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의 반품(82.1점, 2016, 2017 동일), 2위는 검사기준·방법의 불명확한 선정 등 목적물 등의 부당한 불합격 판정으로 인한 반품(80.6점), 3위는 원사업자의 품질불량 원재료로 인한 목적물 등의 불합격 판정에도 불구하고 반품(80.5점), 4위는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79.0점), 5위는 대금지급시점의 물가·자재가격이 납품시점보다 낮아진 이유로 하도급대금 감액(79.7점)으로 조사되었음. 상위 1위, 2위, 4위 항목은 2017년 조사에서 Top5 포함되었음.
-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1위, 2위 3위이며, 부당한 위탁 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4위, 부당감액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5위에 해당함.
- 부당반품 및 부당한 위탁취소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대체로 높은 것은 건설공사에서 목적물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자보수 등을 치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완성된 시설물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으로 Bottom 5 항목을 선정한 결과는 <표 5-3> 과 같음.

<표 5-3>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하위 5개 항목

범주	항 목	체감도 점수
1	⑥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	55.7
1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	57.5
7	③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음	57.6
1	⑩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	58.0
7	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음	58.6

- 체감도 점수가 가장 낮은 1위 항목은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5.7점), 2위는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7.5점), 3위는 공사대금 조정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57.6점), 4위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58.0점), 5위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58.6점)로 조사되었음.
- 공정거래 체감도가 낮은 순으로 1위, 2위, 4위가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이며, 3위와 5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임.
- 하위 1위, 2위, 3위 항목은 2017년 조사에서도 Bottom 5 포함되었음. 주목할 점은 전년도 조사와 달리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7-①, 7-③)이 하위 5개 항목에 포함되었는데, 현장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부당특약,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체감도 점수가 낮은 편이며 이들 범주에서 불공정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중에서도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고 하위 권에 속하는 항목이 많아서 부당특약에 대한 정책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감독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 중에서 재작업·추가작업·보수작업 비용 중 수급사업자 미책임 사유로 발생한 비용부담 약정(55.7점),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7.5점),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58.0점) 항목은 체감도 점수가 50점대에 그치고 있어 불공정행위의 정도가 특별히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특약은 계약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실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확인하기 쉽지 않은 계약문서나 구두방식으로 부당특약 설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하도급계약은 원·하도급업체 당사간의 사적계약으로 공공의 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임. 따라서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대금의 조정 부문 항목의 체감도 점수 순위가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서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나 지급보다 조정에 대한 체감도 점수가 낮은 것이 특징적임.
-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지급 및 조정은 하도급계약의 핵심적 요소로서 공정하게 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는 것은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 하도급업체들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공정거래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을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과 조정의 적정성은 근로자 가계의 소득수준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대체로 하도급대금을 공정하게 결정하고 적기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하도급대금이 변경되어 조정되는 상황에는 관심이 부족한 편임. 향후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이후 계약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불공정거래 발행 억제에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함.
  -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정임금 지급과 관련한 정책은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을 통한 성장이라는 국정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안임. 따라서 정책당국은 부당특약,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적발과 시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임.
  
- 3배 손해배상제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당한 위탁취소와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의 체감도 점수는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볼 수 있으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감액 범주는 양호한 편이 아님.
  - 3배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관계의 특성상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로 큰 손해를 입었더라도 향후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입비용이 과다하고, 승소의 가능성과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규모가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따라서 3배 손해배상 소송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위한 사전상담과 소송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이종광 연구기획위원(jglee@ricon.re.kr)
- 박승국 연구실장(skpark@ricon.re.kr)

(부록) 체감도 조사 설문지

## 건설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체감도 조사 설문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원·하도급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하여 **부당특약 금지**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난 **2017년 1년간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감도 조사로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귀사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내용은 집계자료로만 활용되어 응답자나 기업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귀사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체감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 ▲ 조사거래: **2017년** 1년 동안 이루어진 건설하도급거래
- ▲ 조사내용: 하도급법 상 불공정 거래행위
- ▲ 조시시점: 2017년 3월 29일 ~ 4월 7일
- ▲ 조사방법: 무기명 작성 → 팩스 제출

※ 항목을 잘 읽어보신 후 체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특약(하도급법 제3조의4)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계약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간접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법 제4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정당한 사유 없이 <b>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b>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정당한 사유 없이 <b>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수급사업자에게 <b>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원사업자가 <b>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b>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b>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대금 인하 등 <b>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b>					

### 3. 부당한 위탁취소(하도급법 제8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4. 부당한 감액(하도급법 제11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부당한 반품(하도급법 제10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거래상대방(발주자)으로부터의 <b>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b> 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또는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b>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b> 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b>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b> 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b>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b> 하는 행위					

## 6. 하도급대금 지급(하도급법 제13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하도급대금을 <b>지급하지 않는</b> 행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계약에서 <b>약정한 지급기일(따로 약정한 기일이 없으면 최대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b> 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준공금을 지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b>준공금을 받고 15일을 초과하여 지급</b> 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b>현금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제외)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b> 하는 행위					

7.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b>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b>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조정 받은 날부터 <b>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b> 행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공사대금을 조정(증액) 받았음에도, <b>조정 사유와 내용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는</b> 행위					

8.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항 목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	매우 많다
수급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a·b·c·d)를 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a.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 등에 신고 b.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거나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c.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 d.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					

## 2018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2018년 08월 31일 인쇄

2018년 08월 31일 발행

발행인 서명교

발행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3층(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TEL (02)3284-2600

FAX (02)3284-2620

홈페이지 [www.ricon.re.kr](http://www.ricon.re.kr)

등록 2007년 4월 26일(제319-2007-17호)

I S B N 979-11-5953-044-9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